

문서번호 : 연금WM1센터 제 2023-00079
일자 : 2023-09-01
수신 : 수신처 참조
참조 : 집합투자상품 관련 부서
제목 : [수시공시]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(1년&1개월)

1.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.
2.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3조 제 3항 제 4호 및 제 5호에 근거한 소규모펀드 수시공시(1개월) 내용 및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」 별지 제8호 및 제11호 서식에 따라 소규모펀드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, 이를 자본시장법 제 89조 제 2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시공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기준 일자 : 2023년 8월 31일
2.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내용

- 1년 공시: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
- 1개월 공시: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

【첨부】소규모펀드 수시공시(1년&1개월) 리스트 1부. 끝.

수신처: BNK투자증권, DB금융투자, IBK기업은행, IBK투자증권, KB증권, NH투자증권, SC은행, SK증권, 교보증권, 미래에셋생명, 미래에셋증권, 삼성증권, 수협은행, 신영증권, 신한은행, 신한투자증권, 유안타증권, 유진투자증권, 키움증권, 하나은행, 하나증권, 하이투자증권, 한국씨티은행, 한국투자증권, 한국포스증권, 한화생명, 한화투자증권, 현대차증권 (총 28개사)

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
대표이사 권희백

